

재난 상황 대응을 위한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 기준 예외지침

가산 및 감액산정을 위한 종사자 근무시간 입력 방법 안내

2025년 6월

요양심사실

목차

1.이재민 종사자 근무시간 입력 방법

2.대피명령 기간 동안의 종사자 근무시간 입력 방법

1. 이재민 종사자 근무시간 입력 방법 안내

○ 종사자 근무시간 인정 특례 내용

1) 대상: **이재민**이 된 **입소시설*** 종사자 및 가정방문급여 제공기관 시설장, 사회복지사

* 입소시설 :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2) 내용: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로 종사자**가 이재민이 되어 유급휴가 처리된 경우,
5일의 범위 내에서 1일 최대 8시간 월 기준 근무시간 인정

** 월 기준 근무시간 적용을 받는 종사자

3) 서류: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
(피해사실확인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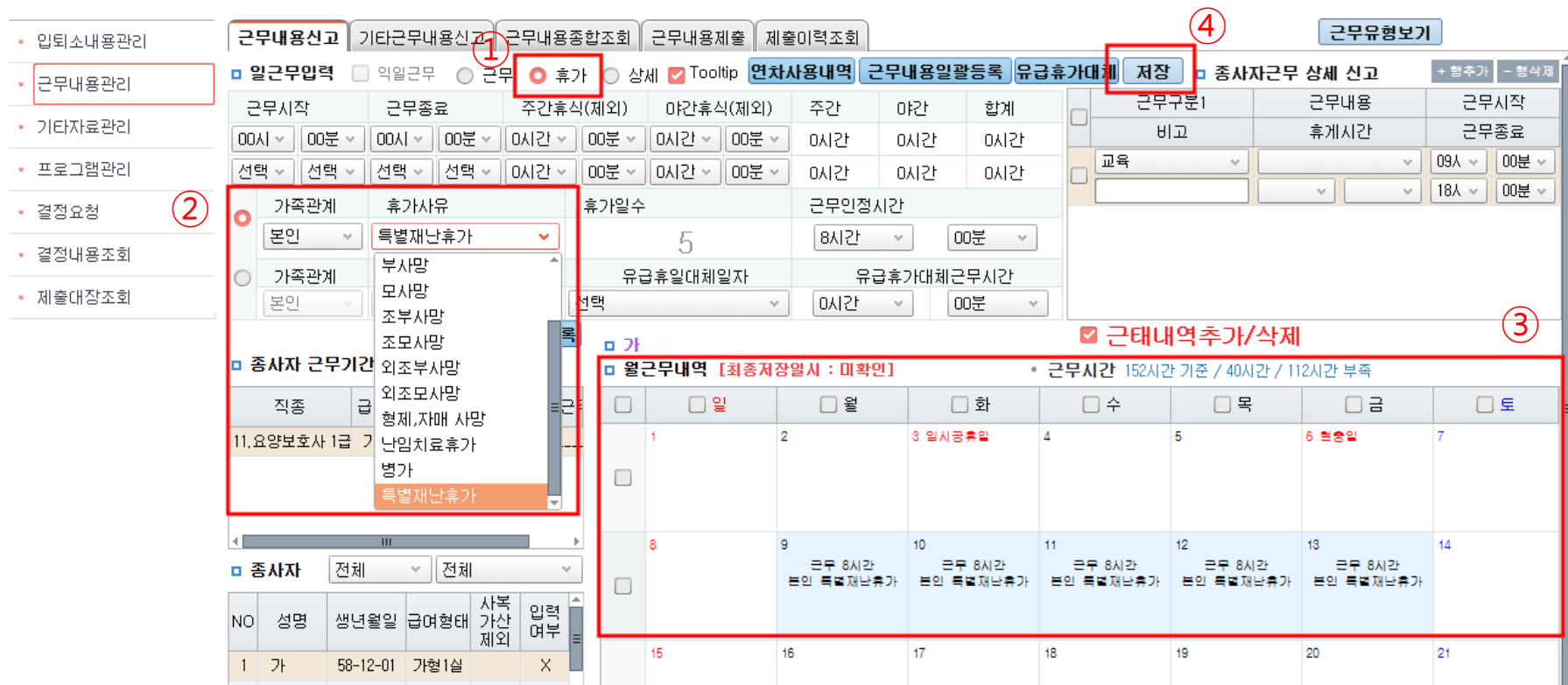
1. 이재민 종사자 근무시간 입력 방법 안내

○ 이재민 종사자 근무시간 입력 방법

1) 경로 : 가산및감액산정 > 수가가산 및 산정비율 > 근무내용관리 > 근무내용신고

2) 이재민 종사자 선택 > 입력코드 “휴가” > 가족관계 : “본인” >

휴가사유 : “특별재난휴가” > 월근무내역에 해당하는 일자 클릭 > 저장



• 입퇴소내용관리

• 근무내용관리

• 기타자료관리

• 프로그램관리

• 결정요청

• 결정내용조회

• 제출대상조회

근무내용신고 기타근무내용신고 근무내용종합조회 근무내용제출 제출이력조회

□ 일근무입력 □ 익일근무 ○ 휴가 ○ 상제 Tooltip 연차사용내역 근무내용일괄등록 유급휴가대체 저장 □ 종사자근무 상세 신고 + 형추가 - 형삭제

근무시작 근무종료 주간휴식(제외) 야간휴식(제외) 주간 야간 합계

00시 00분 00시 00분 0시간 00분 0시간 00분 0시간 0시간 0시간

선택 선택 선택 선택 0시간 00분 0시간 00분 0시간 0시간 0시간

가족관계 휴가사유 휴가일수 근무인정시간

본인 특별재난휴가 5 8시간 00분

가족관계 부사망 모사망 조부사망 조모사망 외조부사망 외조모사망 형제,자매 사망 난임치료휴가 병가 특별재난휴가

□ 종사자 근무기간

직종 급

11.요양보호사 1급

유급휴일대체일자 유급휴가대체근무시간

□ 가

□ 월근무내역 [최종저장일시 : 미확인]

□ 근무시간 152시간 기준 / 40시간 / 112시간 부족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1 2 3 임시승용임 4 5 6 현충일 7

8 9 근무 8시간 본인 특별재난휴가 10 근무 8시간 본인 특별재난휴가 11 근무 8시간 본인 특별재난휴가 12 근무 8시간 본인 특별재난휴가 13 근무 8시간 본인 특별재난휴가 14

15 16 17 18 19 20 21

□ 종사자 전체 전체

NO 성명 생년월일 급여형태 사복가산 제외 입원여부

1 가 58-12-01 가형1설 X

2. 대피명령 기간 동안의 종사자 근무시간 입력 방법

- 대피명령으로 피해기관(A)의 수급자를 대피기관(B)로 전원조치한 경우
피해기관(A) 종사자의 근무시간 인정

(사례1) 피해기관(A) 종사자가 대피기관(B)에서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한 경우

- 대피기관(B)에서 장소만 제공받고 피해기관(A) 종사자가 피해기관(A)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 지자체 승인에 따라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근무시간 인정**

기존에 가감산 화면에 근무시간 입력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월 근무내역에 해당 종사자의 실 근무시간을 입력**

2. 대피명령 기간 동안의 종사자 근무시간 입력 방법

- 대피명령으로 피해기관(A)의 수급자를 대피기관(B)로 전원조치한 경우 피해기관(A) 종사자의 근무시간 인정

(사례2) 피해기관(A) 종사자가 대피기관(B)에서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 지자체로부터 대피명령 등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대피명령이 해지된 시점까지 1일 최대 8시간을 월 기준 근무시간을 인정
- 해당 시간은 가산 적용을 위한 근무인원수에는 미포함

2. 대피명령 기간 동안의 종사자 근무시간 입력 방법

○ 대피명령으로 피해기관(A)의 수급자를 대피기관(B)로 전원조치한 경우 피해기관(A) 종사자의 근무시간 인정

② 종사자 검색 팝업 발생 > 조회 > 종사자 체크박스 클릭 후 선택

종사자검색 [npfa302p03] X

• 성명

☒ ☐

성명	생년월일	직종	근무시작일	근무종료일
가		11.요양보호사 1급	2025-02-01	9999-12-31

③ 사유 “재난상황대피명령기간” 클릭 > 시작일과 종료일 입력 > 저장

휴가특례 [최종저장일시 : 2025-05-27 15:40:55]

사용 일수 1~30일: 가산 산정 근무 인원 수 포함
사용 일수 31~60일: 가산 산정 근무 인원 수 미포함

성명	생년월일	직종	사유	기존사용일수	시작일	종료일	일수	시간	총사용일수
☐ 가		11.요양보호사 1급	출산(분만) 출산(분만-다태아) 유산(사산) 재난상황 대피명령기간	0	2025-03-01	2025-03-10	10	80	10

시작일과 종료일은 급여제공월을 기준으로 입력

예시 : 대피명령기간이 2025년 3월 30일 ~ 2025년 4월 5일인 경우

급여제공월 3월 → 시작일 2025-03-30 종료일 2025-03-31

급여제공월 4월 → 시작일 2025-04-01 종료일 2025-04-05

감사합니다